

Employment

What is payment in lieu of notice (PILON)?

PILON이란 무엇이며 왜 유용한가?

PILON조항은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즉각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끔 고용 계약서에 넣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법으로 정해진 노티스 기간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노티스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파기하고 언제든지 고용인을 회사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PILON 조항을 계약서에 종종 포함시킵니다. 고용주는 전 직원이 퇴사 후 회사와 경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을 쓰게 됩니다.

PILON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는 노티스 기간을 대신해 그 기간 만큼의 급여를 지불하게 됩니다. 노티스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면 여러 번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PILON 조항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PILON 조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노티스 기간 중 받았을 보너스나 커미션에 대한 지급
- 노티스 기간 중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지급
- 노티스 기간 중 직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즉,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용인의 기본 급여 뿐이라는 점을 PILON조항에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잘못된 행동(gross misconduct)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만일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잘못된 행동을 이유로 해고할 권리가 있다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노티스 대신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피고용인이 큰 실수를 저질러 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PILON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법정에서 결정이 나며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점은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을 해고 하시기 전에 법률 조언을 얻으시면 부당 해고 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David Rushmere
Solicitor Advocate
E: david.rushmere@3hrsc.com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3HR Benefits Consultancy Limited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rm Reference Number: 556015

The registered office of bot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and 3HR Benefits Consultancy Ltd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Mainline Tel: 0207 194 8140 Web: www.3hrsc.com